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- 가. 제안이유
 -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변경 (안 제4조)
 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5조 제1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개정사항(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)을 반영하고 변경된 인용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